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임태봉**

| 목 차 |

I. 머리말	IV.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내용	V. 반환과 기증 문제
III.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VI. 맺음말

| 논문요약 |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동 협상이 실패했다는 결과에 초점을 둔 나머지, 당시 한국 측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한일회담과 동 협상에 임해야 했다는 점, 주요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동 협상에서 가지는 의미 등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을 위해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반환과 기증 문제’를 검토하면서 동 협상을 재조명해 보았다.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에 있어서 일본 측을 설득시켜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는 문화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측에게 문화재 목록을 수차례 제시하면서 일본 측을 구체적인 논의로 끌어들이었다. ‘반환과 기증 문제’에 있어서는 기증을 주장하는 일본 측을 설득하여 반환의 명목을 인도로 타협했다.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었으며, 당시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측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임(NAHF-2018 한일-지정연구자-1). 본고에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대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의교수

을 설득시켜 현실적인 결과를 얻어낸 협상이었다.

- 주제어: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문화재 목록 제출, 반환과 기증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이하 문화재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일 양국은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과거사의 청산과 새로운 국교 수립을 위해 한일회담을 개최했다. 문화재 문제는 기본관계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어업 문제와 함께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고, 식민지 시기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였다. 문화재 문제 역시 다른 주요 의제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 제7차 회담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문화재 협정)으로 타결되었다.

한일회담 초기, 한국 측은 문화재 문제에 대해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이었으며,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를 법적 의무로써 반환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되도록 많은 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으려고 했다. 반면 일본 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고, 당시 일본이 발굴·반출한 문화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 자발적인 의사로 약간의 국유 문화재를 기증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되도록 적은 수의 문화재를 기증하려고 했고,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동 문제 논의에 대해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 양국의 이러한 입장들이 충돌하면서 문화재 문제는 14년간의 논의 끝에 약 1,400점의 문화재가 한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문화재 반환 협상의 결과에 대해 반환이 아닌 인도가 되었다는 점, 인도받은 문화재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등 많은 비판이 내려졌다. 특히 과거사 청산을 상징하는 반환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 협상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단 문화재 반환 협상뿐만 아니라, 기본관계 문제와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내려져 왔다. 연구자들은 한일회담에서 체결된 협정들에 대해 개정 혹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인, 시민단체, 피해자들도 이를 폐기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¹⁾ 한일회담은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문화재 반환 협상 등 한일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만으로 한일회담을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일회담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을 위해서 당시의 상황과 함께 의제 논의 과정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2005년 이후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는 당시의 회담 상황과 의제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차 자료 분석을 통해 한일회담을 재평가하는 연구들도 등장했다. 趙胤修(2007)는 어업 협상의 결과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한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평가에 대해 현재의 시각에서 어업 협상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측이 영해 설정 문제에 대해 양보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한국 측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는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었다고 논했다. 유의상(2016)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 협정이 불완전하고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시각에서 동 협정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한일회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동 협정은 한국의 외교 교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과물로 인정받고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논했다. 두 연구는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어업 협상과 청구권 협상 과정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두 협상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했다. 이러한 논의는 해당 협상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한일회담연구, 나아가 한일관계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1) 한일회담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및 그 외의 비판적인 의견은 유의상(2016, 12-15)의 논의 참조.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고는 상기 연구들과 궤를 같이하면서, 1차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재 반환 협상을 재조명할 것이다. 문화재 반환 협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는 물론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판들은 겹쳐히 수용해야 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환경적 제약과 시대적 필요성, 일본의 교섭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치기준과 당위론적인 입장에서만 평가하는 것(유의상 2016, 17)은 협상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협상의 실패라는 결과에 초점을 둔 나머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양보했다는 인상이 들기도 한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통해 당시의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에 한국 측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동 협상에 임했는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 협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동 협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문화재 반환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협상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동 협상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화재 반환 협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문화재 반환 협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동 협상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을 하고, 한일회담 연구와 한일관계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교사적 접근을 통해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을 재조명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분석 내용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반환과 기증 문제’를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정리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내용

1. 선행연구의 검토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그 결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다. 먼저 제성호(2009)는 반환 등 원상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용어의 불명확성,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나타나지 않은 소극적인 문헌 규정,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한 무합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국성하(2005)는 제1차 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의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을 검토하고, 문화재 반환 협상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논했다. 조부근(2004)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과 한국-프랑스 간의 외규장각 도서반환협상이 모두 실패한 협상이었고, 두 협상에서 나타난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양면 계엄을 통해 분석했다. 이외에도 연구 논문은 아니지만, 반환이 인도라는 애매한 용어로 변질되었고 유일합법정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 출토 유물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사상계』 1965/07, 81), 반환의 의무를 변질시키고 사유 문화재의 기증 권장을 통해 법률적인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사상계』 1965/08, 72-73)는 비판적인 논고도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패 요인과 비판적인 측면들을 검토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항들을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협상 결과에만 초점을 둔 것이 많고, 1차 자료를 통해 협상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1차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인상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한국 측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에 임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일회담에 영향을 끼친 한일회담의 개최 배경,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교섭 태도, 미국의 직간접적인 관여라는 대외적인 요소 그리고 한국의 열악한 외교 인프라와 교섭 능력, 명분과 실리의 불가피한 타협이라는 대내적인 요소(유의상 2016, 475-491)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반환 협상과 관련하여 일본 측이 기증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다는 점, 한국 측이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일본조차도 한국 관련 문화재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측이 동 협상에 임해야 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측은 기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려고 했다. 이는 단순히 문화재를 기증한다, 반환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당성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전제로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문제에 대해 식민지 지배 당시 이루어졌던 문화재 반환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²⁾ 따라서 반환이 된다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일본 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³⁾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입장은 문화재 반환 협상에 있어서 한국 측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측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일본 측을 설득시키면서, 되도록 자신들의 입장에 가까워지게 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한편 문화재 반환 협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 조운수(2016)는 일본정부의 문화재 반환 목록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제1차 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의 문화재 반환 협상을 검토했다. 연구의 분석 결과 중 하나로, 한국 측 전문가들의 활약을 통해 문화재 반환 목록이 확대될 수 있었고, 이것은 문화재 반환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지현(2012)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과 그 이후의 한일 간의 문화재 문제를 검토했는데,

2) 자민당에 비해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일본의 민주당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10일에 발표된 ‘내각총리대신 담화’를 둘러싸고, 병합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간 나오토 총리는 ‘일한병합조약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답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首相官邸 (2010), “菅内閣總理大臣記者會見,”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kaiken.html>. (2019년 5월 1일 검색) 즉 민주당 정권도 한일회담의 기본조약에 대해 당시 일본 측의 입장이었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한국 측의 청구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권 문제 논의의 한계로 작용했다.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 논의 당시 한국 측에게 제공할 자급에 대해서도 청구권과는 관계없는 경제협력자금으로 생각했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제공된 5억 달러도 경제협력자금으로써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는 이원덕(1996), 장박진(2009), 유의상(2016)의 연구 참조.

결과적으로 문화재 반환 협상은 실패했지만, 제4차 회담 이후의 한국 측 전문가들의 활약은 선전한 측면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논했다. 두 연구는 한국 측 전문가들의 활약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활약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이 활약한 전문가회의가 어떤 논의를 통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전문가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을 검토한다면 전문가들의 활약, 그리고 문화재 목록 논의 등 전문가회의를 둘러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측면들은 염두에 두면서,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어떠한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문화재 반환 협상을 재조명해 볼 것이다.

2. 분석 내용

본고는 문화재 반환 협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한국 측이 어떤 측면에서 논의를 주도해 나갔고,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켰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반환과 기증 문제’를 검토한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이다. 이는 문화재 문제의 구체적인 논의 여부가 달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선행연구들은 이 문제를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 문화재 문제는 제1차 회담에서 제3차 회담까지 청구권소위원회에서 청구권 문제와 함께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에 비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일본도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4차 회담부터 문화재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제1차 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와 같이 청구권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문화재 문제가 논의되었다면, 혹은 일본 측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

지 못했다면, 문화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측이 일본 측을 설득시켜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를 개최해 가는 것, 즉 한국 측의 주장이 관철되어 문화재 문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가는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재개될 회담에서의 문화재 문제 검토 논의’,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논의’, ‘전문가회의 개최 논의’를 살펴본다.

둘째,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이다. 이는 일본 측이 한국 측에게 건넨 문화재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문제이다. ‘반환과 기증 문제’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제였던 반면에, 이 문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였으며, 제4차 회담 이후 문화재 반환 협상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이었다. 당시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 논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본 측을 논의로 끌어들이려 했고 일본 측도 결국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즉 문화재 목록 제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화재 문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행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문화재가 목록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췄지만(국성하 2005; 박훈 2010; 조운수 2016), 본고는 한국 측이 일본 측을 구체적인 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재 목록을 제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살펴본다.

셋째, ‘반환과 기증 문제’이다. 이는 문화재 문제에서 과거사 청산을 상징하는 문제였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화재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문화재를 반환받음으로써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했던 반면, 일본 측은 과거사 청산과는 상관없이 국교정상화 기념 등의 현실적인 의미에서 문화재를 기증하려고 했다. 일본 측은 반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고 자발적으로 약간의 국유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했다. 이 문제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은 반환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측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반환의 명목을 인도로 하는 것, 즉 인도라는 형식으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마저도 반대했으나, 결국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인도로 그 입장을 변경했다. 본고에서는 한국 측이 기증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인도로 설득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검토한다.

Ⅲ.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1. 재개될 회담에서의 문화재 문제 검토 논의

제1차 회담부터 제3차 회담⁴⁾까지 문화재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함께 청구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제1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제1항목이 ‘한국에서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의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 지은을 반환할 것’으로 문화재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제3차 회담이 결렬된 이후 약 4년간 한일회담이 중단되었으나, 이 시기 한일 양국은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비공식 교섭을 진행했다. 이 시기, 문화재 문제는 1957년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재개될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본 측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한국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약간의 고미술품을 기증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외상이 구두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기증이 아닌 인도로 할 것, 약간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外務省 1957a; 外務省 1962). 이후 한국 측도 구두전달사항 안을 제안했고, 일본 측은 문부성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2월 말과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구두전달사항 안을 제출했다. 3월 중순에 제출된 구두전달사항에 대해 한국 측은 “would like to hand over”라는 표현을 “will turn over”로, “which it finds practicable to deliver to Korea”라는 표현을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로, “those objects of ancient art of the Korean origin”이라는 표현을 “those Korean art objects”로, 그리고 “in the possession” 앞에 “now” 삽입 등을 요구했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at an early possible date”에 대해 “as soon as possible” 혹은 “as soon as practicable”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

4) 제1차 회담은 1951년 10월 20일부터 1952년 4월 15일까지,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에서 7월 23일까지, 제3차 회담은 1953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지만, 일본 측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外務省 1957d). 한국 측은 위와 같은 표현의 수정을 통해 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일본 측의 의지와 그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문화재의 원산지가 한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반면에 일본 측은 문부성의 반대와 문화재 인도로 인한 국내 여론의 비판을 고려하여 인도 시기에 대한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엄태봉 2017, 174-175).

이후 6월 13일의 회의에서 한국 측은 3월 중순에 논의된 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측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Aside from the agenda of the overall talk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turn over to Korea,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로 구두전달사항이 합의되었다.

일본 측은 6월 중순까지 문화재 문제를 비롯한 교섭들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나, 한국 측은 6월 25일 회의에서 합의문서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 측은 구두전달사항과 관련해서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turn over to Korea,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 and for the later transfer of the said objects discussion and settlement will be made at the formal talks.”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외교부 1958a). “and for the later 이하의 표현”에서 인도받을 문화재 이외의 것들도 재개될 회담에서 논의하려고 했던 한국 측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 즉 문화재를 인도받은 이후에도 남은 문화재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려는 한국 측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다. 이 회의에서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 측은 이를 비롯한 한국 측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 한 달간 논의가 중단되었다.

7월 말부터 한국 측의 수정요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7월 31일의 회의에서 일본 측은 “미술품 문제는 agenda에는 없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말한다면, 이 점은 큰 변경이다. 귀측의 수정으로는 이 문제가 정식회담의 의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면서, 한국 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外務省 1957e). 8월 20일에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한국 측은 나중에

인도될 문화재들을 전면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이 수정안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결정된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수락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후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6월 13일에 합의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는 전면회담의 의제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며, 한국 측이 수정을 계속 요구할 경우 구두전달사항도 철회하자고 반박했고, 결국 이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外務省 1957f). 이처럼 “and for the later 이하의 표현”을 둘러싸고, 한국 측은 재개될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한편, 일본 측은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구두전달사항은 좀처럼 합의되지 못했다. 이후 11월 말에 접어들자 한일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29일의 회의에서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의 요구를 수락하는 한편,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와 강제퇴거 문제 등 청구권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 한국 측의 요구를 수락했다(외교부 1958a). 이에 따라 구두전달사항은 6월 25일에 한국 측이 요구한 수정안으로 합의되었다.

이처럼 한국 측은 구두전달사항 논의에서 일본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재개될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구두전달사항의 논의는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개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재 문제가 보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논의

한일 양국은 제4차 회담(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9일) 개최 직후,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일연락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일 양국은 기본관계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어업 문제에 대해 그 명칭은 다르나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었던 반면, 문화재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의 위원

회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 측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선박반환문제소위원회’, ‘한국문화재반환문제소위원회’, ‘그 외 청구권에 관한 소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는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측은 재개될 회답에서 문화재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 측은 제6회 본회의(1958년 5월 6일)에서 ‘한국청구권위원회’에 문화재 문제 관련 소위원회가 없이 ‘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의 설치만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이것이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하면서 동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外務省 1958a).

왜 한국 측은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없었는데도 일본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정부 부처 간의 서신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 외교부는 4월 21일에 ‘4월 15일에 재개된 한일회담 제4차 회답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의제로써 채택 논의될 것인바’라고 문교부에게 보고했으며(외교부 1958c), 주일대표부도 5월 7일에 나머지 고미술품들은 청구권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국정부에게 보고했다(외교부 1960b). 또한 5월 21일의 교섭방침은 “그 외의 청구권”은 ‘한국미술품 반환’의 만족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예비회담 때부터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외교부 1960a). 이렇듯 한국 측은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청구권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일본 측 제안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의 예상과는 달리 5월에 열린 세 차례의 청구권위원회에서 문화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제2회 청구권위원회(5월 27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를 두고 대립했다. 일본 측은 이 문제를 청구권소위원회와 선박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권 문제로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입장, 즉 문화재 문제를 청구권과 분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長澤 2011, 217). 반면 한국 측은 이 문제는 중요하고, 이에 대한 소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청구권위원회가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소위원회와 선박소위원회로 나누어진 것이며, 문화재 문제를 청구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대답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회의 종료 후,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회의를 따로 열어 논의했지만, 이 역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外務省 1958b). 이처럼 한국 측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한국 측은 5월 28일, 일본 측을 설득하기 위해 사와다 렌조(澤田廉三) 수석대표와 이타가키 오사무(板垣修) 아시아국장을 찾아갔다. 유대하 주일공사는 이타가키에게 왜 일본 측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임병직 수석대표와 이호 대표는 사와다를 만나 일본 측 주장의 철회를 요구했고, 사와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청구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외교부 1958b). 제3회 청구권위원회(5월 29일)가 열리자, 일본 측은 청구권소위원회에서 문화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측은 정식 회의가 아닌 직접 회담 당사자를 찾아가면서까지 일본 측을 설득했고, 이러한 설득이 유효했던 것이다. 이후 제4차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는 문화재소위원회를 통해 따로 논의가 되었고, 1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문화재 문제가 제1차 회담에서부터 제3차 회담 때까지 청구권위원회에서 청구권 문제와 동시에 논의된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제4차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가 형식적으로는 청구권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실질적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문화재 문제만을 논의하는 문화재소위원회가 마련되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재 문제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은 제5차 회담부터 형식적으로도 문화재소위원회가 되었고, 제7차 회담 때까지 이 틀 속에서 문화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3. 전문가회의 개최 논의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는 또 다른 회의로 전문가회의를 들 수가 있다. 전문가회의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 간에 문화재의 반출 경위와 소재 파악 등

사실 관계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써 제5차 회담(1960년 10월 25일-1961년 5월 16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재 목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갔다.

제5차 회담에서 전문가회의 개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1960년 11월 11일)에서 구두전달사항으로 이미 문화재 문제의 원칙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문화재 반환의 7항목’(이하 7항목)을 제출했다. 7항목은 일본정부에서 중요문화재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1항목), 소위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고적연구소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2항목), 통감 또는 총독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3항목),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4항목), 고려시대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5항목), 서화, 서적 및 지도원판(6항목), 개인소유의 문화재(7항목)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1년 1월 26일에 열린 비공식회담에서는 “한국 측에는 전문가가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대표가 위원으로 와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단계가 되었으니, 일본 측에서도 전문가를 내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일본 측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들을 참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외교부 1961a). 미술공예 전문가인 황수영이 참가한 제2회 문화재소위원회(1961년 2월 1일)에서 한국 측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재차 제안했고, 일본 측은 전문가들 간의 논의는 문화재소위원회와는 관계없이 소위원회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문가회의 개최에 동의하는 한편, 외무성은 문부성에게 전문가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문화재 문제의 원칙, 즉 문화재를 돌려받는다는 원칙이 이미 구두전달사항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재가 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 측의 전문가가 이미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논의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일본 측에게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압박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7일에 첫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고 ‘7항목’ 중 고대 분묘의

출토품과 궁전, 사찰 등의 유적에서 반출된 석조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한국 측은 문화재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일본 측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한국 측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조운수 2016, 144). 한편 황수영은 회의 말미에 “문화재 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있어야 함은 귀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인바, 과거에 귀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회합을 갖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일본 측도 동의했다(외교부 1960b). 이와 같이 한국 측은 일본 측을 설득하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황수영의 발언과 함께, 제2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전문가회의 개최가 합의된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뒤 전문가회의가 열린 것을 봤을 때, 일본 측이 전문가회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3월 20일에 열린 비공식회의에서도 제1회 전문가회의 개최 이후, “일본 측은 사무가 바빠 3월 말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하여 더 회합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안 될 것이므로 일본 측에게 막연히 전문가 여러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드러냈다(외교부 1960a). 한국 측은 불만은 황수영의 전문가 증원 요청에서도 알 수가 있다. 황수영은 3월 20일의 비공식회의에서 일본 측이 두 명의 전문가를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문화재소위원회는 2회 이후 개최됨이 없고, 전문가의 모임도 일측의 이유로 금월 말까지 기대되지 않사온데”라고 설명하면서, 고고학과 고서적 전문가의 증원을 요청했다(외교부 1960c). 한국 측은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회의는 좀처럼 개최되지 않았고, 4월 15일의 회의에서 한국 측은 또다시 “문부성 측이 도무지 심의에 잘 응하지 않고 있으며, 3월 중순에 약속한대로 빨리 1명 또는 2명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우리 측 전문가와 접촉케 하여주기 바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5월 8일에 제2회 전문가회의가 개최되고, 전직 전문가인 이홍직이 새롭게 참가했다. 한국 측은 황수영과 이홍직이라는 당시 한국 최고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가함으로써 강력한 진용을 갖추고 전문가회의에 임할 수 있었다(박훈 2010, 366). 한편 제3회 전문가회의는 5월 16일 개최가 합의되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한일회담 자체가 중단되어 개최되지 못했다.

제6차 한일회담(1961년 10월 20일-1964년 4월 5일)에서 전문가회의는 총 여섯 차례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1961년 10월 31일)에서 전문가들도 되도록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제2회 문화재소위원회(11월 7일)에서 전문가들은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소위원회와는 별개로 전문가들 간의 논의라면 나올 것이라고 답하는 한편, 전문가회의의 공적효력에 대한 한국 측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합의가 된 점을 문화재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답변했다(外務省 1961a). 이후, 외무성은 문부성에게 한국 측이 전문가회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고, 문부성도 문화재 반환 여부를 논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참가하겠다고 답했다(外務省 1961b). 이리하여 11월 17일에 제1회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섯 차례 걸쳐 '7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 측 전문가들은 전문가회의 참가에 소극적이었지만, 한국 측은 그들의 참가를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일본 측 전문가들도 전문가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문화재 목록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12월 12일)에서 황수영이 전문가회의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왔고, 조사 의뢰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회답이나 조사가 반드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유감도 있으나 하여간 계속해서 사실 확인을 해왔다. 예를 들면 테라우치 문고 일부 서화의 확인, 오구라 박물관이 문화재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소장품을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선할 것, 또 원래 자리에 돌릴 것은 돌려야 한다는 좋은 의견도 개진되었다.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러한 전문가회의에서 사실 확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외교부 1964)고 평가한 것처럼, 한국 측이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문가회의를 통해 사실 확인 등 문화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측은 전문가들을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시키는 한편, 전문가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본 측 전문가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문화재 목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논의가 문화재인도품목의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IV.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한국 측은 제1차 회담 제1회 청구권위원회(1952년 2월 20일)에서 ‘청구권 8항목’을 제시하면서, 제1항목에 대해 탈취 혹은 한국의 의지에 반해 반출된 문화재들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제3회 청구권위원회(2월 27일)에서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요강안 한국 측 제안의 상세 제1항목’을 제출했다. 이후 한국 측은 제2차 회담에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 일본 각 문고 소장’ 및 ‘일본 소재 한국 국보 미술공예품 목록’을, 제3차 회담에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을 제출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요구대로 상세 목록을 제출했지만, 일본 측은 문화재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시기에 한국 측은 ‘반환과 기증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입장이었고, 청구권 문제 중심으로 청구권위원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재 목록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4차 회담부터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의 설득으로 문화재 문제만을 논의하는 문화재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네 번째 회의까지 국내 정치상황과 정부훈령이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다. 한국 측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일본 측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주일대표부에게 일본 측이 “한국에게 건낼 수 있는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일본 측이 리스트 제출을 주저할 경우, 대표단은 일본의 답변을 위해 대표단이 결정한 최소 1,000점이 포함된 리스트를 제출하고, 동시에 금후 추가 리스트가 제출된다는 조건을 붙인다”라는 훈령을 내렸다(외교부 1958c). 주일대표부는 이 지시에 따라 다섯 번째 회의(1958년 10월 25일)에서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항목’을 제출하고 각 항목을 설명했다. 이는 지정문화재(1항목),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2항목), 통감·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것(3항목),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5항목), 고려시대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 측이 동 항목을 제출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논의가 문화재 반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外務省 1958c). 즉 위의 항목을 바탕으로 한국 측이 원하는 문화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한국 측은 각 항목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정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한국 측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제5차 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제시한 ‘7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회의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에 걸쳐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는 고대 분묘의 출토품과 궁전, 사찰 등의 유적에서 반출된 석조물, 그리고 미술품, 고고학 자료, 전적 등에 대해 한국에서 출토 또는 반출된 경위 및 그 소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한국 측은 경남 창령 고분 출토품, 테라우치(寺内) 총독 수집 불상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외교부 1961b). 제4차 회담부터 제5차 회담까지 한국 측에게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목록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진전에는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제출이 유효했다.

제6차 회담에서는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문화재관계회의를 통해 문화재 목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소위원회에서는 ‘7항목’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회의에서는 특정 문화재의 소재 파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제4회 문화재소위원회(1961년 12월 5일)까지 ‘7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제출도 요구했다. 여섯 차례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는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석굴암의 석탑과 불상 및 다보탑의 석사자, 오구라(小倉) 컬렉션, 체신 문화재, 테라우치 문고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조사결과가 보고되는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한편 문화재관계회의에서는 제7회 문화재소위원회(1962년 2월 28일)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반환청구한국문화재목록’⁵⁾을 중심으로 일본 측이 동 목

5) 동 목록은 ‘제7항목’을 5항목, 20건의 문화재로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인데, 양산부 부총 출토품, 평양 지역 출토품,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 고서적,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그 외 유적의 출토품,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소장품 등이

록에 대한 내용과 반출근거 등을 질의하고, 한국 측이 이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3회 문화재관계회의(1963년 2월 22일)에서 일본 측은 관헌의 힘이나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반출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을 한국 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떠나 학술적·문화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싶으며 이 회의를 중단하고 전문가들 간의 비공식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구체적인 확인 작업과 현물과의 대조 작업 등을 위해 이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수했다(외교부 1963). 이후 한국 측은 ‘제3항 일본 국유에 속하는 것’과 ‘제2항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것’ 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고려자기 목록을 제출했고, 일본 측은 이를 조사하여 한국 측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외교부 1963). 또한 한국 측은 일본 측에게 궁내청 장서 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일본 측이 이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 측도 한국 측에 대한 질의응답 및 반론을 펼치면서 논의에 임했고, 내부적으로도 외무성과 문부성이 문화재인도품목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제6차 회담에서는 문화재 목록에 대한 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제7차 회담(1964년 12월 3일-1965년 6월 22일)이 개최되고, 한일 양국은 1965년 2월 22일의 기본조약 가조인 및 4월 3일의 합의를 통해 회담 타결에 박차를 가했다. 제1회 문화재위원회(4월 24일)에서 한국 측은 새로운 문화재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에 대한 일본 측의 목록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 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앞으로 제시할 문화재 목록은 최종안이며,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목록 제출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하는 한, 이 전문가회의는 앞으로 당분간 열 수 없다’고 응수했다(外務省 1965b).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종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을 받으라는 김동조 주일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문화재 목록의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外務省 1965a; 外務省 1965b).

일본 측이 최종안을 제출한 것은 한일회담 타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제3회 문화재위원회(6월 11일)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양산부부총 등 그동

기재되어 있었다.

안 요구했던 문화재들이 들어 있지 않았고,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목록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본 측은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한국 측은 6월 18일에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문화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경주 노서리 고분과 황오리 고분 출토품의 전부,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 97점,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일부, 고려시대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일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한국 측이 ‘반환과 기증 문제’를 집중해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다거나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문화재 반환 협상의 큰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여 일본 측을 논의에 끌어들이었다.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일본 측이 시종 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을 논의로 끌어 들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을 수시로 제출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한편, 일본 측의 조사와 함께 문화재 목록 제출도 요구했다. 제4차, 제5차 회담에서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에 관한 태도는 한국 측의 예상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제6차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인도품목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V. 반환과 기증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은 법적 의무로 문화재를 반환받음으로써 과거를 청산하려고 했던 반면, 일본 측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약간의 국유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기증하려고 했다. 한국 측은 제1차 회담부터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기증이라는 입장은 확고했다. 일본 측은 한일회담 개최 이전부터 “조선에서는 그 시정 초기부터 약탈을 엄격하게 금하고, 오히려 종래 간과되던 문화재 존중 정신을 고양했으며, 보존시설을 충실히 하여 연구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일본에도 없

는 것을 확보한 것과 초대총독의 현명한 대책에 의한 것이었다”(大藏省管理局 발행연도불명, 88), 그리고 문화재보존에 대해 “일본의 반도통치에 대한 빛나는 기념비로서 유식자를 통해 세계의 사람들에게 널리 이해시키고, 동시에 반도 사람들이 이 점만은 영구히 기억하기를 바란다”(藤田 1951, 246)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회담 개최 이후에도 일본 측에게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고,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문화재 반환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근거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제1차 회담에서부터 제3차 회담까지 ‘반환과 기증 문제’로 대립했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인도가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회담 중단기였다. 1957년 2월에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은 기증이 아닌 반환을 요구했고,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인도를 제안했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넨다’라는 표현이 삽입된 구두전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문부성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기증이나 증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고, 한국 측은 기증이나 증여는 곤란하며 ‘인도한다’ 혹은 ‘건넨다’가 좋다고 반론했다(外務省 1957b). 3월에 접어들자 일본 측은 문부성의 반대를 다시 언급하면서, 기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두전달사항이 최대한의 표현이라고 말했고, 한국 측은 기시 총리과의 회의에서 문화재를 인도한다는 취지를 기시 총리가 언급해 줄 것을 제안하자, 기시 총리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外務省 1957c). 일본 측은 3월 중순에 hand over가 사용된 구두전달사항을 제시했고, 이후 기증이나 증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국 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일본 측은 인도를 받아들였고, 구두전달사항에도 인도가 삽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106점의 문화재가 한국으로 인도된 이후, 제4차 회담부터 제5차 회담까지 한일 양국은 또다시 ‘반환과 기증 문제’로 대립을 했는데, 한국 측은 제6차 회담에서 다시 인도를 제안했다. 이 시기 한국정부는 한일회담을 타결 짓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방침을 정했는데, 문화재 문제 관련 방침에는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인도를 제안할 것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일본 측에게 인도를 제안한 것이었다. 먼저 한국 측은 문화재소위원회 대표 간의 비공식회의(1962년 2월 1일)에서 동 문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환을 고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외교부

1964), 김종필-오히라 회담(11월 12일)에서는 구두전달사항의 선례에 따라, 즉 인도를 명목으로 문화재를 반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외교부 1960a). 일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기증을 주장했으나, 한국 측도 예비회담 제20회 본회의(12월 21일) 및 제23회 본회의(1963년 1월 23일)에서 인도를 계속해서 제안했다. 한국 측은 제6차 회담 시기, 반환과 기증이라는 입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 방법으로 인도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6차 회담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었다.

‘반환과 기증 문제’는 제7차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인도로 합의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청구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일본은 3월 22일에 증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3월 25일의 회의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3월 27일에는 문화재 문제가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제6항으로 설정되었고, 3월 31일에는 인도라는 표현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기증을 고수하던 일본 측이 결국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측의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를 외교문서상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일회담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⁶⁾ 이후 4월 3일,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의 제6

6) 김-오히라 합의(1962년 11월 12일)를 바탕으로 난제였던 청구권 문제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회담의 타결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 내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일본 측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회담은 2년 넘게 정체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은 1964년 12월 3일에 제7차 회담을 개최하고, 본회의의 논의를 통해 회담을 조기 타결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먼저 기본관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1965년 2월 18일부터 2일간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 간의 회담을 통해 한일회담 조기 타결을 표명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2월 20일에는 기본관계 문제의 합의사항들이 규정된 기본조약이 가조인되었다. 이와 같이 한일회담 조기 타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한일 양국은 3월부터 기본관계 문제 이외의 현안들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 결과, 4월 3일에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었다. 한일회담의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일본 측도 문화재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인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7차 회담 개최부터 4·3 합의까지의 각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吉澤文壽(2005, 210-250)의 논의 참조.

항으로 “한일 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에 관련하여 양국은 품목 기타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일본국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문화재를 인도한다”는 것이 합의되는 한편, 6월 22일에 체결된 문화재 협정의 제2조에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인도라는 표현은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애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문화재 반환 협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지적받고 있다. 한일회담 당시 일본 측은 기증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고, 더 나아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 그리고 당시의 문화재 반출도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반환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한국 측도 당연히 기증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측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인도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었다. 즉 한국 측은 반환이라는 입장을 관철시킬 수는 없었지만, 기증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측은 회담 중단기와 제6차 회담 이후 인도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일본 측은 기증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 했지만, 일본 측도 결국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제7차 회담에 인도라는 표현이 합의가 된 것이다.

VI. 맺음말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반환이 아닌 인도가 되었다는 점, 인도 문화재가 질적·양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실패한 협상이라는 결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되어 왔다. 본고는 이에 대해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동 협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반환과 기증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일본 측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동 협상을 재조명해 보았다.

제1차 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 문화재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함께 청구권소위원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문화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 회담 중단기에 한국 측은 재개될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구두전달사항에 삽입시키는 한편, 제4차 회담 및 제5차 회담 등에서 일본 측을 설득시켜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문화재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은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와 같은 문화재 문제만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본 측을 설득시켰다.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서 ‘반환과 기증 문제’, 그리고 문화재 목록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한국 측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문화재 문제는 청구권 문제 논의에 가려져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측을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재 목록을 수시로 제출했다. 제4차 회담 이후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문화재반환의 7항목’, ‘반환청구한국문화재목록’ 등을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시켰다. 한국 측이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고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일본 측에게 답변과 조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 측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에서는 문부성의 전문가가 전문가회의에 참가하여 논의에 임했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재인도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 제출을 통해 일본 측을 논의로 이끌어 들였고, 이 목록들의 논의가 축적되어 문화재인도품목이 작성될 수 있었다.

일본 측의 문화재 문제에 대한 입장은 회담 중단기를 제외하고, 기증 혹은 증여였다. 한국 측은 회담 중단기 때 기증을 주장하는 일본 측을 설득시켜 인도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후 시종일관 기증을 주장하는 일본 측에 대해 제6차 회담 때부터 인도로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제7차 회담에서 결국 인도로 합의되었다. ‘반환·기증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증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상쇄시

킬 필요가 있었다. 그 방법은 인도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를 반환받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측도 결국 이를 받아들여 문화재 협정에서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한국 측은 반환의 방법을 반환에서 인도로 변경했지만, 이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는 아니었다. 일본 측의 기증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끌어내려 인도로 합의했던 것이다.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한국 측이 되도록 많은 문화재를 반환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합법적인 식민지 지배, 합법적인 문화재 반출, 자발적 기증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일본 측에 대해 한국 측은 그들을 설득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되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소극적인 또는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 측을 설득시켜 가면서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했고, 이는 문화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틀이 되었다. 또한 문화재 문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측에게 문화재 목록을 수차례 제시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 일본 측을 끌어들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문화재인도품목이 작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 측을 설득시켜 반환의 명목을 인도로 합의했다.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일본 측의 입장이 더욱 반영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최선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는 아니었으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측의 주장을 관철시켜 현실적인 결과를 얻어낸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국성하 (2005).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pp. 369-393.
- 김지현 (2012). “전후 한일 문화재반환 교섭에 관한 재평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훈 (2010).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의제로 본 한일회담-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선인, pp. 357-382.
- 엄태봉 (2017).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제21호, pp. 160-193.
- 유의상 (2016).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박진 (2009).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 제성호 (2009). “한·일 간 문화재 반환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pp. 441-488.
- 조부근 (2004). 『잃어버린 우리문화재를 찾아: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실제/불법거래와 국제협약/문화재 외교』. 민속원.
- 조윤수 (2016).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51호, pp. 125-165.
- 吉澤文壽 (2005). 『戦後日韓關係-國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東京: クレイン.
- 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集, pp. 245-262.
- 長澤裕子 (2011). “日韓會談と韓國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請求權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 李鍾元他.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II-脱植民地化編』.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pp. 205-234.
- 趙胤修 (2007). “韓漁業交渉の國際政治-海洋秩序の脱植民地化と‘國益’の調整-.” 東北大學法學研究科博士學位論文.

2. 기타

- 외교부 (1958a).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 2 1957)』. 외교부.
- ____ (1958b). 『제4차 한일회담(1958. 4. 15-60. 4. 19)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8. 5. 20.-12. 17』. 외교부.

- _____ (1958c). 『제4차 한일회담(1958. 4. 15-60. 4. 19)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외교부.
- _____ (1960a).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 외교부.
- _____ (1960b).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제1-15차, 1958. 4. 15.-60. 4. 15』. 외교부.
- _____ (1961a).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 보고, 1960. 11-61. 5』. 외교부.
- _____ (1961b).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 11-61. 5』. 외교부.
- _____ (1961c).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입면관계, 1960-61』. 외교부.
- _____ (1962). 『김중필 특사의 일본방문, 1962. 10-11』. 외교부.
- _____ (1963). 『제6차 한일회담(1961. 1. 20-1964. 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문화재관계회의. 동경, 1963』. 외교부.
- _____ (1964).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1962-64』. 외교부.
- 外務省 (1957a). 『金公使と會談の件(1957年2月21日)』. No. 680. 外務省.
- _____ (1957b). 『金公使と會談の件(1957年2月28日)』. No. 680. 外務省.
- _____ (1957c). 『岸總理金公私と會見の件』. No. 682. 外務省.
- _____ (1957d). 『六月十三日, 大野次官, 金韓國大使會談要領(その二)』. No. 686. 外務省.
- _____ (1957e). 『板垣アジア局長, 三宅參事官と柳公使, 崔參事官會議要領』. No. 108. 外務省.
- _____ (1957f). 『昭和三十三年八月二十日 三宅參事官と崔參事官會談録』. No. 111. 外務省.
- _____ (1958a). 『第四次日韓全面會談の本會談第六回會合』. No. 6. 外務省.
- _____ (1958b). 『第四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韓國請求權委員會の第二回會合』. No. 444. 外務省.
- _____ (1958c). 『第四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請求權小委員會(文化財)の第五回會合』. No. 445. 外務省.
- _____ (1961a). 『第六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會第二回會合』. No. 267. 外務省.
- _____ (1961b). 『韓國文化財問題に關する文部省との打合せに關する件』. No. 574. 外務省.
- _____ (1962). 『日韓會談問題別経緯-文化財問題』. No. 535. 外務省.
- _____ (1965a). 『第七次日韓文化財委員會第二回會合』. No. 457. 外務省.

- _____ (1965b). 『第7次日韓會談文化財專門家會合第1回』. No. 459. 外務省.
大藏省管理局 (發行年不明). “第七章 教育文化政策とその実績.” 『日本人の海外活動
に關する歴史的調査』. 通卷第四冊朝鮮編第三分冊. 東京: 大藏省管理局.
- 김원룡. “문화재 반환문제.” 『사상계』. 제149호. 1965년 7월.
- 부완혁. “한일협정은 추진·동의될 수 없다.” 『사상계』. 제150호. 1965년 8월.
- 首相官邸 (2010). “菅内閣總理大臣記者會見.”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kaiken.html>. (2019년 5월 1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9년 05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05월 23일 |

| 게재 확정일 : 2019년 06월 17일 |

| ABSTRACT |

A Rethinking on the Negotia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Korea-Japan Talks

Um Tae Bong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aejin University)

The negotia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Korea-Japan talks have been highly criticized in Korea.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talk has limited the efforts of scholars to address the structural disadvantages Korean delegates ha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nd point out the partial success of outcomes in the talks. This study rethinks the negotia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se review and tries a more balanced interpretation of the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conferences on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Korea pushed its agenda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by establishing a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and expert meeting. In the case of ‘cultural property list issue’, Korea took the lead in discussions by submitting the list of cultural property to Japan which showed a passive attitude. In the ‘return and donation issue’, Korean delegates had led to the compromise to define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urn over’ as return, rather than ‘donation’ Japan preferred.

Korea, in spite of Japan’s passive attitude or opposition to the negotia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has made its assertions about the above problems. The negotia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ere not a one-sided concession by Korea but the outcome of compromises which brought the significant concession of Japan.

228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 Keyword: Korea-Japan Talks, Negotia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Conferenc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Submission List of Cultural Property, Return and Donation